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6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김민전 · 서천호 · 김용태

최수진 · 박수영 · 김상훈

김재섭 · 조정훈 · 김종양

나경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

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신분보장 등)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각각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교육감선거에서 해당”을 “교육감선거에서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거나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신분 보장 등)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각각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u>
<u>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생략)</u>	<u>제24조의3(교육감의 소환)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u>
<u>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생략)</u>	<u>제24조의4(교육감의 퇴직) (현행 제24조의3과 같음)</u>
<u>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u>	<u>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u>

<p>만두어야 한다. 다만, <u>교육감선거</u>에서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 략)</p>	<p>-----. -----<u>교육감선거</u>에서 제24조의2에 따라 <u>해당 선거</u>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거나 <u>해당</u>----- -----. -----.</p> <p>② (현행과 같음)</p>
---	---